

	현장실습 운영규정	문서번호	MSU-
		제정일자	2011. 3. 18.
		최종개정일자	2022. 4. 1.
		담당부서	기획산학처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목포과학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학칙 제10조 1항과 3항, 제24조 5항에 의거 실시하는 학생의 현장실습 교육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현장실습 수업방법"(이하 "현장실습학기제"라 한다)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현장실습기관 간 산학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실시되는 학교 밖으로 연장된 경험학습에 의한 수업방법을 말하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구분한다.<개정 2021.09.01.>
- ②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란 현장실습학기제 중 학기별 수업일수 기간 동안 주 또는 월 단위의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기간을 최소 1개월 이상으로 편성하여 운영하는 형태를 말한다.<신설 2021.09.01.>
- ③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란 현장실습학기제 중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달리 운영되는 현장실습학기제로 본 대학교 총장의 책임 하에 학교 자율적 기준으로 운영하는 형태를 말한다.<신설 2021.09.01.>
- ④ "현장실습기관"(이하 "실습기관"이라 한다)이란 학생의 실무 교육 및 실습 등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이 가능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연구기관, 국내외 기업 등을 말한다.<개정 2021.09.01.>
- ⑤ "현장실습생"(이하 "학생"이라 한다)이란 전공 관련 실무 경험을 제공받기 위해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는 학생을 말한다.<개정 2021.09.01.>
- ⑥ "교육시간"은 실습기관에서 부여하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전 교육, 수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점검, 지도 등의 시간(이하 "직무 관련 교육시간")을 말한다.<신설 2021.09.01.>
- ⑦ "현장실습지도교수"(이하 "지도교수"라 한다)란 실습기관의 발굴, 실습생의 실습기관별 배정, 실습내용 및 진행상황에 대한 순회지도, 현장실습 종료 후 실습생에 대한 평가 등을 실시하는 교원을 말한다.<신설 2021.09.01.>
- ⑧ "현장실습지원비"(이하 "실습지원비"라 한다)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및 수행과 관련하여 실습기관에서 학생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신설 2021.09.01.>
- ⑨ "실습기관 교육 담당자"란 실습생의 출결, 교육운영, 실습평가 및 실습생 보호 등에 대한 책임이 있는 "실습기관이 지정한 실습기관 소속의 실습생 교육담당자"를 말한다.<신설 2021.09.01.>

⑩ "순회지도"란 실습기간 중 실습기관을 방문하여 운영형태 및 여건 등을 점검하고 실습에 참여한 학생들의 실습수행 태도 및 상태 등을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21.09.01.>

⑪ "현장실습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이란 대학과 실습기관이 현장 실습 운영에 관하여 약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⑫ "현장실습지원센터"란 현장실습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대학에서 운영하는 현장실습 지원 전담 조직을 말한다.<개정 2021.09.01.>

제3조(적용범위) ① 대학은 현장실습에 대하여 법령, 학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개정 2021.09.01.>

② 본 규정은 총장이 인정하는 실습기관의 협약에 의한 학생들의 현장실습 학점인정에 한하여 적용하며, 협약에 의하지 않은 일체의 현장실습에 대해서는 학점인정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신설 2021.09.01.>

③ 별도 법령 등에서 특정 전공에 대해 필수 이수하여야 하는 실습형태의 교육과정이 편성되어 운영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현장실습은 해당 법령을 우선하여 적용한다.<신설 2021.09.01.>

1.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영양사 현장실습,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육현장실습,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에 따른 학교현장실습 등 별도법령에 따른 의무실습 등<신설 2021.09.01.>

2.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료과정운영학교 등의 인증절차에 필요한 의무실습 교육과정 및 「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등에 따른 보건·의료 인력의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기시험과 자격요건 충족을 위해 실시하는 의무실습 등<신설 2021.09.01.>

제4조(현장실습지원센터 설치) ① 대학은 현장실습학기제 현장실습을 총괄하는 현장실습지원센터를 설치한다.<개정 2021.09.01.>

② 현장실습지원센터장은 기획산학처장이 겸직한다.<개정 2022.04.01.>

③ 현장실습지원센터는 현장실습 시행계획 수립, 관련 규정 제·개정 등 현장실습 시행 전반에 관하여 총괄적으로 조정·관리하며,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1. 실습기관 발굴 및 선정 관리
2. 실습기관의 수요조사, 참여신청 및 접수 관리
3. 학생 참여 신청, 접수 및 사전교육
4. 실습기관과의 업무 협의
5. 현장실습 운영 자료 관리
6. 현장실습 수행 점검 및 지도 등에 관한 사항

④ 현장실습지원센터는 세부 운영 계획서를 검토하고 실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현장실습 운영 및 계획을 확정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⑤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는 현장실습 운영 중 현장실습 수행 점검을 학과를 통해 실시하여야 한다. 단, 수행 점검의 방법은 현장방문 또는 서면을 통한 점검 등으로 할 수 있다.

⑥ 현장실습지원센터는 실습 관련 수행 사항을 교원업적평가 등에 반영한다.

- ⑦ 지원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여 조직을 운영 관리한다.
- ⑧ 지원센터에는 직원을 둘 수 있다.

제2장 운영 및 관리

제5조(현장실습 종류 및 운영기준) ① 현장실습 시기에 따라 학기제(3~6월, 9~12월 중 실시) 및 계절제(6~8월, 12~2월 중 실시)로 구분하며, 실습기간에 따라 계절제(4~8주), 반 학기제(8주 이상), 지역적 범위에 따라 국내 및 해외 현장실습으로 구분한다.

② 현장실습은 실습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실습기관의 근로환경과 동일한 여건 하에서 실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일 8시간/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연속적으로 최소 4주(160시간) 이상 실습하여야 한다.<개정 2016.11.7>

③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전일제를 기반으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1주간 5일을 연속으로 운영하여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운영한다. 단, 실습수행 과정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실습기관이 학생의 동의를 받아 1주간 최대 5시간을 한도로 실습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21.09.01.>

④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의 운영 기간 및 시간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의 운영 기간 및 시간 범위에서 본 대학교와 실습기관 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실습기관의 근무제 형태가 1주간 4일 미만이거나, 대학에서 실습기관의 근무제 형태와 다르게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하여야 한다.<신설 2021.09.01.>

제6조(운영체계) 현장실습의 운영은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총괄하고, 학과장은 지도교수 및 현장실습지원센터와 협의하여 실습기관의 발굴, 실습시기, 실습기관별 실습생 배정, 순회지도 등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결정한다.<신설 2021.09.01.>

제7조(운영원칙) ① 현장실습은 대학의 실습기관, 실습생 간의 현장실습에 관한 협약에 따라 운영하며, 취지와 목적, 상호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한다.<신설 2021.09.01.>

② 실습기관은 실습생을 관리, 교육, 보호하는 실습기관 교육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전공 분야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목적과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부과할 수 없다.<신설 2021.09.01.>

③ 대학은 현장실습 운영 기준, 방법 및 준수사항, 수강신청 및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 각종 사고 및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교육, 성희롱 예방 교육 등 사전 교육을 실시한다.<신설 2021.09.01.>

④ 대학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중 상해 등의 사고로 인한 생명, 신체상의 손해 및 배상 책임 등의 상황에 대비하여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신설 2021.09.01.>

⑤ 신규 발굴한 실습기관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전 서면 또는 현장점검을 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점검할 경우 운영 기간 중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참여하는

실습기관이 화학물 및 유해물질 취급 환경 사업장, 제조·생산 활동 등이 실습내용으로 포함된 사업장 등인 경우에는 반드시 운영 전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21.09.01.>

⑥ 실습기관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는 학생에 대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가입 후 1주일 이내에 현장실습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1.09.01.>

⑦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1일 기준 1시간 이상 휴게시간과 1주일 기준 1일 이상의 휴일, 실습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학생이 1개월 기준 1일의 휴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휴게시간과 휴일이 보장되어야 하난. 이 경우 1주 기준 1일의 휴일과 1개월 기준 1일의 휴일은 유급휴일(공휴일 포함)로 한다.<신설 2021.09.01.>

⑧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실습 시간 및 기간을 고려하여 휴게 및 휴일에 관하여 협의하여 실시한다.<신설 2021.09.01.>

제8조(현장실습의 요건) ① 현장실습학기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수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어 운영하여야 한다.<신설 2021.09.01.>

1. 현장실습학기제에 대한 교육과정 편성 및 교과목 개설
2.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수강신청, 등록절차 및 이수과정
3. 실습기관 현장교육 담당자 지정 및 현장
4.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에 대한 점검 계획
5. 출결 및 평가 관리 등 학점 부여 근거와 기준
6. 기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현장실습학기제는 제1항에 따라 학생의 수강신청 등의 완료된 이후에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실습학기제가 실시된 해당 학기의 학점으로 부여되어야 한다.<신설 2021.09.01.>

제9조(신청자격 및 절차) ① 현장실습은 최소 2개 학기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학생 중 해당 학기 등록을 마친 재학생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계약학과인 경우 산업체 요구에 따라 1학년 1학기부터 매 학기 현장실습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1.09.01.>

② 산업체위탁교육과정 및 재직자특별전형과정 등의 재직 중인 학생은 현장실습 신청대상자에서 제외한다.<신설 2021.09.01.>

③ 현장실습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은 수강신청기간 내에 개설된 교과목의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2021.09.01.>

제10조(실습이수) ① 현장실습 교과 개설 학과에서는 현장실습 선발인원을 대상으로 현장실습에 필요한 사전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는 실습학생에게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참시켜 현장에 파견한다.

1. 현장실습 주간보고서(별지8)
2. 현장실습 종합보고서(별지9)
3. 기타 필요한 서류

③ 현장실습에 참가한 학생은 현장실습 주간보고서와 종합보고서를 기록하여 현장실습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현장실습 학생은 실습 종료 후 2주 이내에 관련서류(주간·종합보고서)를 학과에 제출하여 학과장은 수합 후 현장실습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는 이를 토대로 현장실습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현장실습 지도교수가 성적을

⑤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실습기간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1. 대학의 공식행사, 대회 또는 회의에 참석할 경우
2. 국가의 의무적 소집에 응하여야 하는 경우
3. 천재지변(1급 감염병 등)으로 정상적인 교육이수가 어려울 경우
4. 질병, 상해 등으로 정상적인 실습수행이 어려울 경우

⑥ 현장실습을 이수한 학생의 명단은 제반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학과에서 정리하여 성적에 반영한 후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신청서 제출) ① 현장실습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은 정해진 기간에 현장실습 참여 신청서(별지7)를 작성하여 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과장은 학생들의 취합한 서류를 학과별 현장실습 신청자 명부(별지4)와 함께 현장실습지원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선발(배정)절차) ① 각 학과는 학생들의 원활한 실습수행을 위해 진로·적성 자료를 참고, 통근 편의성(거리, 교통편), 취업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② 학과장(또는 지도교수)은 실습기관의 요청사항(실습인원, 요구사항) 및 실습·지원 내용 등을 파악하고 학생과 일대일 상담 및 적합성 평가를 하여 실습생을 배정한다.

③ 학과에서는 현장실습 배정평가표를 현장실습지원센터에 제출한다.

제13조(현장실습 운영계획) ① 학과 및 실습기관에서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장실습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서류를 현장실습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습기관에서 제출한 운영계획은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사전 공지하여 운영한다.<신설 2021.09.01.>

제14조(교육시간 배정 및 운영) ① 실습기관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의 취지 및 목적에 부합하도록 전체 실습시간의 일정 비율 범위에서 직무 관련 교육시간을 배정하여 운영한다.<신설 2021.09.01.>

1.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 25 이하인 경우인 경우로 한다.

2.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는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이 100분의 25를 넘는 경우로 한다.

제15조(현장실습 적합성 검토) ① 학과와 실습기관과의 운영계획 협의·조정 시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검토한다.<신설 2021.09.01.>

1.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의 구체성 및 명확성 여부

2.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과 관련된 전공(학과) 또는 계열 특성의 관련성 및 적합성 등

제16조(현장실습 협약) ① 학교, 학생, 실습기관 간 현장실습 협약 체결은 현장실습학기제를 시작하기 전 또는 시작일까지 체결한다.<개정 2021.09.01.>

② 현장실습 협약은 총장과 실습기관장, 실습생의 명의로 체결함을 원칙으로 하며,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은 현장실습지원센터장에게 위임한다. 단, 업무 상황에 따라 현장실습지원센터장과 현장실습기관의 주관(담당)부서장 명의로 체결할 수 있다.<개정 2021.09.01.>

③ 실습기관, 학교 및 학생의 사정에 따라 협약 변경 및 해지가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을 반영하여 협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21.09.01.>

제17조(실습내용 변경 등) ① 실습기관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중 실습기관의 사정으로 현장실습학기제 내용, 기간, 계획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학교 측에 통보하고 학교 및 학생의 동의하에 변경하여야 한다.<신설 2021.09.01.>

② 실습기관은 학생의 무단결석, 실습지도 거부 및 불성실한 태도 등으로 인해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를 학교 측에 알리고 학교와의 협의하에 현장실습학기제를 중단 또는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실습기관의 사정으로 중단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학생의 현장실습학기제 이수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2021.09.01.>

제18조(현장실습 순회지도) ① 현장실습 방문지도를 담당할 지도교수는 해당학과의 전임교수가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현장실습 지도교수는 현장실습지원센터와 협의하여 현장실습기간 중에 실습기관은 최소 3회 이상 방문하여 실습생의 현장실습 실태 파악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하여야 한다.<개정 2021.09.01.>

1. 실습생의 출결 상황
2. 실습 태도 및 이행능력
3. 현장실습일지 기록 상황 및 실습 지도
4. 실습생을 지도감독, 평가할 실습기관 교육담당자의 지정 여부 및 지도 상태
5. 현장여건 및 실습생의 애로사항 등

③ 순회지도는 방문 및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지도 후 현장실습 순회지도 보고서를 현장실습지원센터에 제출한다.

제19조(현장실습일지 작성) 실습생은 현장실습일지를 매일 기록하여 실습기관 교육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21.09.01.>

제20조(현장실습결과물 제출) 현장실습을 이수한 실습생은 현장실습결과물을 학과장에게 제출(과제물이 있는 경우 과제물 포함)하고, 학과장은 현장실습결과물을 점검한 후 현장실습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1.09.01.>

제21조(성적평가)

① 현장실습이 종료되면 지도교수는 현장실습 성적평가표를 현장실습지원센터에 제출하

여야 한다.<신설 2021.09.01.>

② 현장실습 성적평가는 실습기관 평가 50%, 순회 지도교수 평가 30%, 중간·종합 보고서 평가 20%로 한다.<신설 2021.09.01.>

제22조(출석관리 및 평가 등) ① 학교 및 실습기관에서는 현장실습이 실시된 일정에 따라 출석관리 사항을 관리한다.<신설 2021.09.01.>

② 실습기관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가 종료된 후 1주일 이내 평가표 및 출석부를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하고, 현장실습지원센터는 제출사항에 대한 이상 여부를 검토한다.<신설 2021.09.01.>

③ 현장실습학기제 종료 시점에 현장실습지원센터의 주도하에 실습기관을 대상으로 만족도, 건의사항 등을 조사 및 청취하여 선순환 운영이 되도록 노력한다.<신설 2021.09.01.>

제23조(실습지원비 등) ① 실습기관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의 실습수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여야 한다.<신설 2021.09.01.>

② 실습지원비 산출 기준 및 지급기준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에 따른다.<신설 2021.09.01.>

③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실습지원비는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에 따라 실습지원비의 기준을 적용하되,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 형태로 운영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춰야 한다.<신설 2021.09.01.>

1. 학교에서는 전공 교과체계에 따른 관련 실습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만 실시하고, 실습기관에서는 전공과 관련된 교육 환경 및 여건을 갖추어야 한다.

2. 학교에서는 관련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학생은 해당 과정을 수강 및 등록하여 수업의 하나로 운영하여야 한다.<신설 2021.09.01.>

3. 일련의 과정은 지식이나 기술의 습득 등 학생의 교육목적 및 학사 일정에 따른 학업 성취도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하며, 운영 전 구체적인 학습사항 및 일정이 확정되고 이를 학생이 충분히 확인 후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21.09.01.>

4. 일련의 과정 및 학생이 수행하는 사항은 학생에게 유익이 되어야 하며, 학생의 활동(과정 및 결과물 포함)으로 해당 실습기관에 실질적이거나, 즉각적인 유익이 없어야 한다.<신설 2021.09.01.>

5. 일련의 과정 및 실습기관에서는 학생의 소속 근로자의 대체 인력 또는 추가 인력으로 활용하거나, 학생에게 실습기관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미한 사항을 포함한 일상 업무 수행을 시켜서는 안 된다.<신설 2021.09.01.>

6. 실습기간 동안 학생은 실습기관의 현장교육담당자의 지속된 지도 아래 관찰 및 간접체험 등 직무 체험 형태를 주된 과정으로 하여 참여하여야 하고, 제한적으로 관련 업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적인 업무의 체험은 학생의 학습적 유익에 한정되어 일회성 체험 형태로 운영될 수 있으나,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없다.<신설 2021.09.01.>

7. 일련의 과정에 대하여 실습지원비가 지급되지 않는 조건으로 운영된다는 것을 실습기관, 학교 및 학생 상호간에 사전 동의되어야 한다.<신설 2021.09.01.>

8.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는 일주일 기준 15시간 미만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기간은 2개월 이하로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21.09.01.>

④ 대학은 순회지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도교수에게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09.01.>

⑤ 대학은 원활한 현장실습 운영을 위한 현장실습 지원비, 교육담당자 지도비를 실습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09.01.>

제24조(근로계약) 실습기관에서는 협약 체결 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중 발생할 수 있는 근로 문제 예방 등 학생 보호 조치 목적 등으로 해당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에 대해 학교와 협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신설 2021.09.01.>

제25조(국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국외 실습기관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에 따른다.<개정 2021.09.01.>

제26조(실습기관 변경) ① 실습을 수행 중인 자가 실습기관의 특별한 사정 또는 실습기관과 합의되어 과정변경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실습지원센터의 승인을 받아 다른 기관에서 잔여기간을 이수할 수 있다. 단, 학생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변경은 불허한다.

② 실습생은 현장실습 수행 중 변경 또는 취소시 현장실습 변경·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과에 제출한다.

제27조(실습생의 의무) 현장실습의 목적을 이수하기 위해 실습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학의 명예를 손상시켜서는 아니된다.
2. 현장실습기관의 제 규정 및 안전관리지침을 준수한다.
3. 현장실습 교육을 통하여 알게 된 실습기관의 기밀을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4. 현장실습 도중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즉시 학과에 연락하여야 한다.

제28조(실습 위반자 조치)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학점을 인정하지 않거나 사안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현장실습 중 정당한 사유 없이 1주일 이상 무단 결근자
2. 학생이 지정 또는 허가 받은 실습장소를 임의로 바꾸거나 중단한 자
3. 학생의 신분을 벗어난 행위로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4. 고의적으로 실습기관의 기밀을 누설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는 자
5. 고의적으로 실습기관의 근무 분위기를 저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제29조(국가재난 등에 대비한 현장실습) ①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중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등 국가재난 발생 시 재난 상황에 따라 실습기관과 협의하여 학생 안전 및 보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2021.09.01.>

② 제3조제3항에 따른 대학에서 실시하는 의무실습 운영 중 국가재난 등 발생 시 교내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1.09.01.>

제30조(위임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기 관

제31조(실습기관의 자격 요건)

① 실습기관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법령에 의해 설립된 산업체
 2. 공공기관 및 정부투자기관
 3. 정부출연 연구기관
 4. 법령에 의해 설립된 연구소
 5. 기타 근로자의 인적구성과 시설, 설비 및 후생복지 등이 현장실습을 실시하기에 적합하다고 학과장이 인정하는 산업체
- ② 학생의 전공 분야와 연관된 기업 혹은 학생의 전공지식 배양이 가능하도록 전공과 관련한 업무를 부과할 수 있는 기관이어야 한다.
1. 학교기업, 창업보육센터 내 입주 기업 등을 제외한 대학교 또는 대학교의 부설기관에 해당하는 경우는 실습기관으로 인정하지 않음.
- ③ 현장실습에 참여하고자 하는 실습기관은 현장실습학기제 협약서(별지17)를 체결하고 신청기간에 현장실습 참여신청서(별지2),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서(별지16-1,16-2,16-3)를 제출함으로써 참여신청을 완료할 수 있다. 현장실습학기제 평가표 및 출석부(별지18-1,18-2)<개정 2021.09.01.>
- ④ 실습기관에서는 현를 작성한 후 대학에 제출한다.<개정 2021.09.01.>

제32조(실습기관)

① 실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신설 2021.09.01.>

1. 현장실습학기제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계획을 갖추고 있을 것
 2. 학생의 보건, 위생,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
 3. 현장실습학기제에 필요한 시설, 설비, 물품 등을 갖추고 제공할 수 있을 것
 4. 학생의 전공지식 및 실무능력 배양이 가능하도록 전공과 관련된 직무수행 기회 부여 및 관련된 교육, 지도가 가능할 것
 5.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및 학생 지도·관리 담당하는 현장교육담당자를 배치할 것
- ② 실습기관은 다음 각 호의 형태로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할 수 있다.
1. 학교 주도형 : 학교에서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할 실습기관을 직접 발굴하거나 모집하여 운영하는 형태를 말한다.
 2. 실습기관 주도형 : 실습기관에서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할 학교를 지정하거나 모집하여 운영하는 형태를 말한다. 단, 이 경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인 경우만 운영할 수 있다.

제33조(기관섭외)

- ① 교원의 산학협력을 활용하여 신규 실습기관을 섭외하는 경우 실습기관 섭외 내역서(별지1)를 작성하여 현장실습지원센터에 제출한다.
- ② 산업체에서 먼저 현장실습 운영 또는 참여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산업체의 정보 조회 후 방문 점검 및 서면을 통하여 현장실습 기관으로서의 적합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4장 평 가

제34조(개설기준)

- ① 현장실습은 학점이 부여되는 정규 교과목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 ② 학점은 실습기간을 기준으로 학사 규정에 따라 부여하되, 4주(160시간)이상의 최소기준을 이수하는 경우에만 부여하여야 한다.
- ③ 단, 일부학과의 경우 교육과정운영지침에 준하여 학과 교과과정표에 따라 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
- ④ 학과에서는 실습종료 후 2주 이내에 현장실습 결과보고서(별지19)를 현장실습지원센터에 제출한다. 단, 보건계열·사회복지계열에 해당하는 현장실습과목은 별도의 현장실습일지, 출근부, 현장실습평가서 등이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학과 실습일지 및 지침서로 대체가 가능하다.

제35조(학점인정)

- ①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현장실습의 경우 15시간을 1학점으로 인정하며, 학기 당 최대 20학점까지 부여할 수 있다. 또한 대체 교과목의 평점으로 인정한다.<신설 2021.09.01.>
- ② 별도 법령에 따른 현장실습의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신설 2021.09.01.>
- ③ 현장실습 성적은 다음 각 호로 구성된다.
 1. 실습기관 평가 : 50%
 2. 주간 · 종합보고서 평가 : 20%
 3. 실습지도교수 평가 : 30%
- ④ 대학에서는 위 항의 결과를 종합하여 절대평가를 실시한다.
- ⑤ 학기제 현장실습은 해당년도의 정규학기 성적으로 인정하며 계절제 현장실습은 해당년도 계절학기로 구분하여 성적을 인정한다.
- ⑥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취득한 학점은 졸업학점으로 인정하며 성적은 'Pass/Fail' 또는 평점으로 인정한다.<개정 2021.09.01.>
- ⑦ 계절제 현장실습의 경우 160시간 이상 실습 시 학점으로 인정한다.
- ⑧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점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1. 현장실습 중도 포기한 경우
 2. 학점인정의 최소 기준 시간에 미달한 경우

3. 학점인정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19조(만족도조사) ① 현장실습 완료 후 학생, 지도교수, 실습기관에 대하여 만족도조사(별지 13-1,13-2,13-3)를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평가하여 교육개선에 반영한다.

1. 현장실습 운영의 적절성
2. 현장실습 내용의 실효성
3. 현장실습 참여기관에 대한 만족도
4. 기타 현장실습 개선을 위한 건의 사항

제5장 보 칙

제20조(산업체 근무자) 재학 중인 학생이 산업체에 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 현직에서 현장실습을 이수 할 수 있다

1. 학과와 동일계의 회사인 경우
2. 계열이 틀릴 경우 학과장이 학과 특성에 따라 인정 할 수 있다.

제21조(임상실습, 교육실습, 사회복지실습, 보육교사의 실습 제외) 학생 현장실습 교육 중 임상실습, 교육실습, 사회복지실습 및 보육교사실습은 학과 및 과목의 특성에 따라 학과별로 별도의 계획을 작성하여, 기간, 시기, 운영을 달리 할 수 있다.

제22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육부 고시 현장실습 운영매뉴얼을 통해 현장실습지원센터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1. 현장실습기관 섭외 내역서(실습 전 제출)〉

현장실습기관 섭외 내역서				
섭외 내역	학과명		교수명	
실습기관 정보	기관명		대표자	
	주소		실습 수용인원	
	담당자		담당자 연락처	
협의 내역	실습계획			
	기타사항			
위와 같이 신규 실습기관을 섭외하였기에 현장실습기관 섭외 내역서를 제출합니다. 협약서 1부 끝. 20 년 월 일 학과장 : (인)				
현장실습지원센터장 귀중				

〈별지2. 현장실습 참여 신청서(실습기관용, 실습 전 제출)〉

현장실습 참여 신청서

현장실습 참여 신청서				
신청 기관	기관명		대표자명	
	업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지도 위원	성명	직위	
부서		연락처		
요청 사항	실습기간	20 . . . ~ 20 . . .		실습장소
	전공		실습인원	명 ☐ 남 ☐ 여 ☐ 무관
	자격요건			
운영 및 지원	실습내용			
	실습시간	00 : 00 ~ 00 : 00(8시간) 점심시간 제외		
	지원사항	☐ 실습교육비, ☐ 중식제공, ☐ 교통편제공, ☐ 기숙사제공, ☐ 해당사항 없음		
위와 같이 현장실습 참여를 신청합니다. 첨부: 현장실습 운영계획서 1부 20 년 월 일 기관명 : _____ 지도위원: _____ (인) 현장실습지원센터장 귀중				

〈별지3. 현장실습 재학생 명단(학과용, 실습 전 제출)〉

[illegible]

〈별지4. 현장실습 신청자 명부(학과용, 실습 전 제출)〉

현장실습 신청자 명부							
학과명							
신청인원			명		참여기관		업체
순	학번	학년	성명	지도교수	현장실습 기간(주)	현장실습 기관명	과목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위와 같이 현장실습 참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교과목 담당교수: (인)

학과장: (인)

현장실습지원센터장 귀중

〈별지5. 현장실습 사전교육 확인서(학생용, 실습 전 제출)〉

현장실습 사전교육 확인서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는 교육부 현장실습 규정 제18조 2항(지원센터)에 의거 현장실습 사전교육을 실시하오니 교육이수 후 본 양식을 작성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과명	
학번	
성명	
교육일시 및 시간	2020. . . ()시간
교육이수 확인	교육을 이수하였으면 ☐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실습 기준, 방법,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 ☐ 종합보고서 작성방법 및 질의 응답 ☐ 감염예방, 관리교육 ☐ 안전교육 및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 기초직무교육(직장예절 등)
본인은 현장실습교육과정 실습생으로서의 위와 같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실습생 : (인) 현장실습지원센터장 귀중	

〈별지6. 현장실습생 배정평가표(학과용, 실습 전 제출)〉

현장실습생 배정평가표			
학과명			
배정인원		실습기관	외
통근 편의성(거리, 교통편)	지역	성명	
	수도권		
	경기도		
	광주(전라)		
	기타		
신청자 거주지	지역	성명	
	수도권		
	경기도		
	광주(전라)		
	기타		
1:1 상담	지역	성명	
	수도권		
	경기도		
	광주(전라)		
	기타		
실습생 배정	실습기관	성명	
비고(특이사항 기재)			

위와 같이 현장실습생 배정평가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학과장: (인)

현장실습지원센터장 귀중

〈별지7. 현장실습 참여 신청서(학생용, 실습 전 제출)〉

현장실습 참여 신청서					
☐ 계절제, 단기현장실습(4주 이상), ☐ 학기제, 장기현장실습(15주 이상), ☐ 해외현장실습(학기, 학년제)					
학과명			학번		
성명			보험가입	현장실습 신청자 보험계약 체결 개인정보 동의안	
생년월일				동의 ☐ 동의안함 ☐	
주소					
휴대폰			E-mail		
신청 교과목명			이수학기	학년 학기	
	※ 수강신청한 현장실습 교과목명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증 보유현황	자격증명		취득일	인가·관리기관	
어학능력	영어		컴퓨터 활용능력		
	회화	상 ☐ 중 ☐ 하 ☐	W/P	상 ☐ 중 ☐ 하 ☐	
	독해	상 ☐ 중 ☐ 하 ☐	MS Office	상 ☐ 중 ☐ 하 ☐	
	작문	상 ☐ 중 ☐ 하 ☐	기타		
실습희망지역	① 서울특별시 ② 경기도(시,군) ③ 타 지역(시,군)				
본인은 현장실습 교육과정 실습생으로서의 본분을 지키고 제반규정을 준수하며 현장실습이 학교 교육과 연계되어 생산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실습기간 중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는 재해 보험법상의 책임을 제외한 일체의 책임은 본인의 부담으로 하겠음을 서약하며 위와 같이 현장실습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지도교수 : (인) 학과장 : (인) 현장실습지원센터장 귀중					

〈별지8. 현장실습 주간보고서(학생용, 종료 후 제출)〉

현장실습 주간보고서			
학과명			학번
성명			실습기간 20 . . . ~ 20 . . .
실습기관명			지도위원 확인 (인)
실습내용	구분	실습교육 및 내용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		
	6주차		
	7주차		
	8주차		
실습시 수행한 내용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별지8. 현장실습 주간보고서(학생용, 종료 후 제출)〉

현장실습 주간보고서			
학과명			학번
성명			실습기간 20 . . . ~ 20 . . .
실습기관명			지도위원 확인 (인)
실습내용	구분	실습교육 및 내용	
	9주차		
	10주차		
	11주차		
	12주차		
	13주차		
	14주차		
	15주차		
	16주차		
실습시 수행한 내용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별지9. 현장실습 종합보고서(학생용, 종료 후 제출)〉

현장실습 종합보고서			
학과명		학번	
성명		실습기간	20 . . . ~ 20 . . .
실습기관		실습부서	
지도위원 확인	(인)	지도교수 확인	(인)
실습 목표			
실습 내용			
	작성방법 : 실습 내용 중심으로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캡스톤디자인 과제발굴			
	작성방법 : 캡스톤디자인(종합설계) 교과목의 주제로 직무에 연관된 아이디어를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사항			
	작성방법 : 현장실습 후 본인의 느낀점과 개선점을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습활동 사진 ※ 반드시 첨부해야하며, 별지에 추가 가능합니다.			
	사진설명	사진설명	
위와 같이 현장실습 종합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실습생 : (인)			

〈별지10. 현장실습 순회지도 보고서(지도교수용, 지도 후 제출)〉

현장실습 순회지도 보고서				☐ 방문지도 ☐ 서면지도				
실습기관명		지도일자		20 년 월 일				
현장 실습생	학과	학년	학번	성명				
☐ 현장실습기관의 운영 내용 점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현장실습의 목적(전공분야의 실무능력 향상 및 태도 등)과 운영계획에 따라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다.			☐	☐	☐	☐	☐	
2. 현장실습기관의 지도위원은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공정한 평가관리를 하고 있다.			☐	☐	☐	☐	☐	
3. 실습 환경은 안전하며 현장실습에 필요한 시설, 장비 및 물품 등이 원활하게 제공되고 있다.			☐	☐	☐	☐	☐	
4. 현장실습 운영 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으로 운영하고 있다.			☐	☐	☐	☐	☐	
5. 애로사항 및 기타 점검 사항 :								
☐ 현장실습생 지도 관리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진로분야(산업)에 종사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를 습득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	☐	☐	☐	☐	
2. 현장실습에 적극적이고 바른 인성으로 성실하게 임하고 있다.			☐	☐	☐	☐	☐	
3. 현장실습을 통해 구체적인 진로 및 취업 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	☐	☐	☐	☐	
4. 애로사항 및 기타 지도 사항 :								
위와 같이 현장실습 순회지도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지도교수 : _____ (인) 현장실습지원센터장 귀중								

〈별지11. 현장실습 변경·취소 신청서(학생용, 필요시 제출)〉

현장실습 변경 · 취소 신청서			
학과명		학번	
성명		지도교수	
실습기관명		실습기간	
구분			
☐ 현장실습 변경		☐ 현장실습 취소	
변경 전 실습기관명		취소 사유	
변경 후 실습기관명			
변경 사유			
본인은 현장실습 실습생으로 위와 같이 변경 또는 취소 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실습생 : (인) 지도교수 : (인) 학과장 : (인) 현장실습지원센터장 귀중			

〈별지12. 현장실습학기제 성적 평가서(지도교수용, 종료 후 제출)〉

학과장

현장실습 성적 평가서

연번	학번	성명	교과목명	학점	지도교수	평가점수			
						실습 기관 (50)	지도 교수 (30)	보고서 (20)	총점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상기와 같이 현장실습 최종 결과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현장실습지원센터장 귀중

현장실습 만족도 조사서[산업체용]					
문항	평가				
■ 현장실습 내용의 실효성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들은 전공과 관련된 지식,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2.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들은 현장실습에 높은 관심을 보였고, 적극적으로 실습에 참여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3. 현장실습 참여한 학생을 통하여 새로운 아이디어와 분위기 도출에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4.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 중 우수한 학생에 대해서는 취업을 제의할 의사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 현장실습 운영의 적절성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5. 대학의 현장실습계획 및 일정은 적절하게 구성되었고, 계획에 따라 진행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6. 대학에서는 실습과 관련된 실습기관의 요구 및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7. 현장실습을 통해 향후 대학과의 산학협력 및 교류 진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①	②	③	④	⑤
■ 기타 향후 현장실습을 위한 제안					
8. 귀 기관에서는 현장실습 참여 학생 인원이 어느 정도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 이상					
9. 현장실습의 유형으로는 어느 형태가 가장 적절한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귀 기관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형태) ① 계절제 ② 학기제 ③ 계절제 + 학기제					
10. 계절제/학기제 현장실습의 경우 몇 주의 실습기간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계절제 : ____주 / 학기제 : ____주					
11. 위 사항 외에 현장실습에 참여하면서 개선이 필요한 추가적인 사항이 있으면 서술하여 주십시오.					

현장실습 만족도 조사서(실습학생용)					
문항	평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 현장실습에 대한 평가					
1. 대학이 운영 중인 현장실습프로그램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현장실습을 통해 본인의 전공지식과 현장실무능력이 전반적으로 배양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 현장실습 운영의 실효성과 적절성					
3. 현장실습 운영(정보공지, 학생배정 등)은 적절하게 구성되었고, 그 계획에 따라 진행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4. 대학 및 지도교수는 실습과 관련된 학생들의 요구 및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5. 현장실습을 통해 취업 전 기업문화 및 조직 분위기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6. 현장실습을 통해 향후 본인의 진로와 취업 계획수립, 졸업 후 직장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 기타 향후 현장실습을 위한 제안					
7. 학과 교육과정의 이론, 실습 및 실험의 구성비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잘 구성되어 있다. ② 잘 구성되어 있다. ③ 잘 모르겠다. ④ 잘못 구성되어 있다. ⑤ 매우 잘못 구성되어 있다.					
8. 귀하가 생각하는 대학교와 기업의 연계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① 현장 전문가 겸임교수 확대 ② 관련분야 현장 실습 확대 ③ 전공교과목 현장연계강화 ④ 현장 실무자와 공동프로젝트 ⑤ 자유기술()					
위 사항 외에 현장실습에 참여하면서 개선이 필요한 추가적인 사항이 있으면 서술하여 주십시오.					

〈별지13-3. 현장실습 만족도 조사서(교수용, 종료 후 제출)〉

현장실습 만족도 조사서(교수용)					
문항	평가				
■ 현장실습에 대한 평가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 귀하는 학교차원의 현장실습지원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2. 귀하는 현재 운영되는 현장실습 운영 방식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3. 귀하는 현장실습과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수업과의 연계성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4. 귀하는 현장실습이 취업하는데 있어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저 그렇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위 사항 외에 현장실습에 참여하면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 관하여 의견을 서술하여 주십시오.					

사전 서면점검서(신규 실습기관용)

■ 목적

- 본 사전 서면점검서는 실습교육의 안전성 등의 점검을 목적으로 하며,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9조 제6항에 따른 표준 서식입니다.
- 학교와 실습기관 간 처음으로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할 경우에 필요한 서식으로, 실습기관에서는 운영계획서 제출 시 본 서면 점검서 작성본을 함께 학교로 제출해야 합니다.

■ 실습기관 정보

기관(법인)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업태		종목	

■ 자체 점검표 (실습기관에서 작성)

	점검 사항	내용 (해당 사항에 체크 또는 기술)
1	실습기관의 사업장(근무환경) 형태 [복수선택 가능]	☐ 일반사무실 형태 ☐ 연구소 형태 ☐ 생산/제조 등의 공장 형태 ☐ 주 사업장 외(건설현장, 자동차/선박/항공 등) 형태 ☐ 기타 : _____
2	학생이 배정될 부서 또는 실습공간의 환경 및 형태 [복수선택 가능]	☐ 일반사무실 형태 ☐ 연구소 형태 ☐ 생산/제조 등의 공장 형태 ☐ 주 사업장 외(건설현장, 자동차/선박/항공 등) 형태 ☐ 기타 : _____
3	학생에 대한 실습공간 배정 형태	☐ 소속 근로자와 같은 공간에 배정된다. ☐ 소속 근로자와 분리된 별도의 공간에 배정된다.
4	학생에게 실습에 필요한 물품 제공 여부(책상, PC 등)	☐ 모든 필요 물품 및 비용을 제공한다. ☐ 일부 제공한다.(학생 준비 필요 물품 : _____) ☐ 전혀 제공하지 않는다.
5	학생의 제조 또는 생산 업무에 참여 여부	☐ 물품 제조·생산 등의 활동(업무)에 참여하지 않는다. ☐ 물품 제조·생산 등의 활동(업무)에 일부 참여한다. ☐ 물품 제조·생산 등의 활동(업무)을 주 실습 직무로 참여한다.
6-1	학생이 수행할 실습 직무의 화학물질 또는 유해물질 등의 취급 여부	☐ 취급하지 않는다. ☐ 취급한다.(6-2 문항으로)
6-2	화학/유해 물질을 취급할 경우 안전보호장비(구) 제공 여부	☐ 제공된다. ☐ 제공되지 않는다.
	※ 실험·실습 형태 및 화학·유해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는 현장교육담당자의 입회하에 실시되어야 함	
7	기타 유의사항(필요시 작성)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중간점검서(학생 대상용)

■ 학생 정보

성명		학과/전공	
학번		실습기관명	

■ 점검표

번호	점검 항목	선택
1	현재 참여 중인 실습 직무 및 내용이 본인의 전공과 관련되게 운영되고 있나요? (개인의 관심분야가 아닌 전공 측면에서 관련성을 판단) [단일선택]	① 전공과 관련되게 운영되고 있다. ② 전공과 관련된 부분과 무관한 부분으로 운영되고 있다. ③ 전공과 무관하게 운영되고 있다.
2	현재 참여 중인 실습 직무 및 내용이 운영 계획(공지된 실습업무 범위 및 내용)과 일치되게 운영되고 있나요? [단일선택]	① 운영계획과 일치되게 운영되고 있다. ② 일치되는 부분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③ 운영계획과 달리 운영되고 있다.
3	운영계획 및 협약에 따른 주간 실습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단일선택]	① 주 4일 ② 주 5일 ③ 주 6일
4	실제 주간 실습일은 어떻게 되나요? [단일선택]	① 주 4일 ② 주 5일 ③ 주 6일 ④ 기타(주 ____시간)
5	문항 3의 주간 실습일 기준 외 추가로 실습한 경우가 있나요? [단일선택]	① 주간 실습일을 지켜서 운영되고 있다. ② 주간 실습일 외 간헐적으로 추가 실습일이 발생하고 있다. ③ 주간 실습일 외 주기적/상시적으로 추가 실습일이 발생하고 있다.
6	운영계획 및 협약에 따른 일간 실습시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단일선택] *일간 실습시간은 휴게시간 제외한 시간	① 일 6시간 ② 일 7시간 ③ 일 8시간 ④ 기타(일 ____시간)
7	실제 일간 운영시간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단일선택] *일간 실습시간은 휴게시간 제외한 시간	① 일 6시간 ② 일 7시간 ③ 일 8시간 ④ 기타(일 ____시간)
8	문항 6의 일간 실습시간 외 연장실습을 한 경우가 있나요? [단일선택]	① 해당사항 없음(연장실습 없음) ② 1주 기준 5시간 이하 연장 실습시간 운영(간헐적) ③ 1주 기준 5시간 이하 연장 실습시간 운영(주기적, 상시적) ④ 1주 기준 5시간 초과 연장 실습시간 운영(간헐적) ⑤ 1주 기준 5시간 초과 연장 실습시간 운영(주기적, 상시적)
9	야간실습(당일 밤 10시 이후 ~ 익일 오전 6시)이 운영된 적이 있나요? [단일선택]	① 야간(밤 10시 이후)에는 운영되지 않는다.(야간 실습 발생 없음) ② 야간(밤 10시 이후)에도 운영되곤 한다.(야간실습 발생 있음)

【별지15-2】〈현장실습학기제〉(학생 대상용, 실습 전 제출)

번호	점검 항목	선택
10	연장 및 야간실습은 다음 중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나요? [단일선택]	① 해당사항 없음(연장, 야간 실습 없음) ② 상호 동의하에 운영되고 있다. ③ 지시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1	휴게(휴식)시간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단일선택] *휴게시간 : 통상적인 점심시간 포함 1일 1시간의 휴게/휴식 시간	① 1일 1시간 이상의 휴게(휴식) 시간이 보장되어 있다. ② 1일 1시간 미만의 휴게(휴식) 시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12	실습기관의 보건·환경·안전은 어떠한가요? [단일선택]	① 보건·환경·안전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 ② 보건·환경·안전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학교측의 확인 및 개입 필요)
13	실습기관에서는 현장교육담당자(멘토)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나요?(나의 실습을 관리해 주는 분이 있나요?) [단일선택]	① 담당자(혹은 복수의 담당자)를 멘토로 지정하여 운영되고 있다. ② 멘토 성격의 담당자 없이 운영되고 있다.
14	실습기관에서는 운영계획에 따른 교육/지도/피드백 등의 시간(직무 관련 교육시간)을 현재까지의 실습시간을 기준으로 어느 비율로 운영하고 있나요? 예시) 1주 40시간 기준 10시간 정도의 직무 관련 교육시간(교육/지도/멘토링/피드백 등)이 할애된 경우 25%	현재까지의 실습시간 대비 직무 관련 교육/지도/피드백 등의 시간의 비율은 약 ____% 정도로 진행되고 있다.
15	현재 참여 중인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과정에 대해 학생 본인이 느끼는 실질적인 운영형태는 다음 중 어떻게 되나요? [단일선택]	① 현재 참여중인 현장실습학기제 과정은 교육적 측면과 직무수행이 적절히 구성된 현장실습학기제 형태로 판단된다. ② 현재 참여중인 현장실습학기제 과정은 교육적 측면과 직무수행 부분이 부족하며 개선이 필요하다. ③ 현재 참여중인 현장실습학기제 과정은 교육적 측면 없이 대부분 나의 노동력이 활용되는 실질적인 근로 형태로 판단된다.
16	현재 참여 중인 현장실습학기제 과정에 있어 당장 학교측의 개입을 통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나요? [단일선택]	① 현재 실습을 진행함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 ② 추후에도 개선할 점이 있다. (건의사항에 기재요망) ③ 당장 시급하게 학교측의 개입을 통한 개선이 필요하다. (건의사항에 기재요망)
17	현재 진행 중인 현장실습학기제 과정에 있어 학교 측에 알릴 사항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자유롭게 기술해 주세요. [서술형]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계획서

*작성방법 : 공란에는 내용을 기입하며, [] 에는 ○ 기입하여 작성

기관(법인)명				영문기관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개업년월일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종업원 수				매출액		
사업장소재지						
홈페이지						
기관현황	구분		상장여부		사업의 종류(업태)	사업의 종류(종목)
	대기업	[]	코스피	[]		
	중견기업	[]	코스닥	[]		
	중소기업	[]	비상장	[]		
	공공기관	[]				
	협회/기타	[]				

기관	정규 근로시간	▪ 1일 기준 : []시간 / ▪ 1주 기준 : []시간
근로형태	정규 근로일수	▪ 주 : [5]일 / ▪ 근로요일 : [월~금] *월~금 등 요일 기입

관리부서	부서명		성명		직위	
	연락처		휴대폰			
	이메일					

전형방법	서류선발 / 면접선발 / 대학추천선발 등 전형 및 선발방법 기입			
전형절차 및 일정	접수마감일자	면접일자	최종선발일자	※참고일정
	00월00일00시 []	00월00일00시 []	00월00일00시 []	
	일정별도협의 []	일정별도협의 []	일정별도협의 []	

운영계획	붙임 1.의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계획 및 직무기술서에 따라 실시함
------	--

기타사항	Co-op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특이사항 기입(필요시 기입)
------	------------------------------------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따른 실습학기제(Co-op) 운영 기준 및 절차	
[운영기준] 법제처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교육부 고시) 참조	
[운영절차] (대학)Co-op 참여 의뢰(기관주도형의 경우 다음 단계부터) ▶[현재단계](기관)Co-op 참여 신청 및 운영계획서 회신(송부) ▶(대학/기관)상호 협의 후 시행 확정 ▶(대학)Co-op 정보공지 및 교과목 개설 ▶(대학)학생 신청접수 및 추천 ▶(기관)학생선발 ▶(대학)사전 교육/수강신청 실시 ▶(대학/기관/학생)3자 협약체결 ▶(기관/대학)산재/상해보험 가입 ▶(기관)운영계획에 따른 실시/출석관리 및 평가실시 ▶(학생)보고서작성 ▶(대학)성적 평정	

붙임 서류	1.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계획 및 직무기술서 2. 사업자 등록증 ▶최초 참여 시 또는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시 제출 3. 기관소개 자료 ▶최초 참여 시 또는 홍보 목적 등 필요성이 있을 경우 제출
-------	--

본 기관에서는 교육부 고시에 따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기준 및 절차에 대하여 확인하였으며, 이에 귀 대학에서 운영하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과정에 대한 참여 신청 및 운영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날인/서명)

목포대학교 귀중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계획서

■ [붙임1]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계획 및 직무기술서

운영과정	▪방학과정 [] ▪학기과정 []
운영유형	▪직무체험형 [] ▪채용연계형 []
실습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정규실습 시간	오전 시 분 ~ 오후 시 분 (▶휴게시간 1시간 포함하여 작성)
실습요일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연장실습 여부	▪연장실습 없음 [] ▪상황별 실시 [] ▪주기적/상시적 실시 []
산재보험 가입	▪참여 학생에 대한 산재보험을 의무 가입함(법적 의무가입 / 미가입시 운영 불가)
기타사항	▪운영 과정에 대한 별도의 근로계약 체결 여부 Y [] / N [] *근로계약 체결 시 관련사항 또는 기타 특이사항 등 기입

실습지원비	정규실습 시간	▪지급기준 : [월/주 기준 중 선택] ▶ [] 기준 [] 원 ▪교육시간 비율 : 직무 관련교육 % + 직무수행 실습 %
	연장실습 시간	▪지급기준 : [시간 기준] / [] 원 (*교육부 고시 기준에 따라 작성)
	지급예정 일	▪당월 [] 일 또는 ▪익월 [] 일 (*익월의 경우 15일 이내 지급)
기타 지원 사항		▪식사 [] ▪교통 [] ▪기숙사 [] ◀현물지원 사항

현장교육 담당자	부서명		성명	
	연락처		휴대폰	
	이메일			

실습 직무	부서명	
	주소	'실습기관 기본 정보' 상의 주소(위치)와 다른 경우 작성
	직무명	
	교육 목표	*Co-op 직무 수행을 통해 학생이 얻게 되는 교육성과 측면 기술 *
직무개요		*무엇을, 왜(목적, 이유), 어떻게(방법) 어디까지(범위)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술
		*실제로 해당 기관에서 실시할 내용으로만 기입
		*실제와 달리 형식적으로 작성되었거나, 단순·반복적 직무 수행이 확인될 경우
		*근로 등의 민원 및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학교에서는 관련 직무 사항을 확인하고 검토하여야 함

학생 요건	전공 (인원)	00학과 1명, 000학과 1명 또는 000학과/000학과 중 1명 등으로 구체적 대상 전공 또는 계열을 특정하여야 함
	학년	
	학점/평점	
	요구 역량	Co-op 참여 학생에게 요구되는 OA역량, 외국어 역량, 지식/기술역량, 전공과목 이수여부 등 기입
	기타 사항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계획서

실습기관명 :

구분	주요 실습 내용 및 계획	특이사항
1주	※ 상세하게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QT(기업 및 업무 소개, 안전 및 보안 교육, 유의사항 등)	
2주	※ 동일내용 반복 작성은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업무 이해, 담당자 기초소양교육	예) 담당 멘토 지정
3주	예) 보도자료 작성 방법 - 단어 및 용어 설명, 아이템 발굴, 인터뷰 요령 방법	예) 업무 tool 사용법 교육
4주	예) 보도자료 작성 실습 - 인터뷰 진행, 기사 작성	예) 현장 견학
5주	예) 위기관리 이해 1 - 위기대응절차, 사실관계 정리/수집 등	
6주	예) 위기관리 이해 2 - 위기대응절차, 사실관계 정리/수집 등	
7주	예) 중간점검 - 실습내용 중간 검토 등	예) 멘토링, 피드백
8주	예) 위기관리업무 실습 1 - 예상 질의응답 자료 작성(상황 가정)	
9주	예) 위기관리업무 실습 2 - 예상 질의응답 자료 작성(상황 가정)	
10주	예) 위기관리업무 실습 3 - 예상 질의응답 자료 작성(상황 가정)	
11주		
12주		
13주		
14주		
15주	예) 최종점검 및 평가 - 실습내용 결과 검토 등	예) 최종 피드백
기타 참고사항	※ 주(일) 운영 : 1일 8시간, 1주 5일(월~금) 40시간 이내에서 연속적으로 운영 ※ 교육시간 비율 : 직무 관련교육 % + 직무수행 실습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협약서

본 협약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이하 ‘교육부 고시’ 라 한다)에 의거하여 목포과학대학교(이하 ‘본 대학교’ 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교육과정의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실습기관** 참여하는 **학생**, 운영 주체인 **본 대학교** 간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체결한다.

제1조(교육과정) 20 학년도 학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과정으로 운영한다.

제2조(운영사항)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사항은 아래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실습기관명 : _____
2.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내용 및 지도 계획 등은 실습기관에서 본 대학교에 기 제출한 교육부 고시 별지 제1호 서식(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계획서)에 따라 운영한다. 다만, 내용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대학교 측에 통보하고 본 대학교 및 학생의 동의하에 변경할 수 있다.
3. 실습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학생별 실제 실습기간은 실습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협의하여 확정한다.
4. 실습시간 및 요일
가. 실습시간 : 1일 시간 / : ~ : (휴게시간 : 1시간 포함)
나. 실습일수 및 요일 : 주_일□월 □화 □수 □목 □금 □토 □일
다. 교육과정 상 사전협의 및 동의 되지 않은 야간(당일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에 실시될 수 없다.
라. 교육부 고시에 따라 실습기관에서는 실습시간 외 연장실습이 필요한 경우 1주 최대 5시간 한도로 사전 학생의 동의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1주 최대 5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교육부 고시 따라 본 협약서 외 추가로 근로계약 체결형태의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하여야 한다.
5. 휴게 및 휴일
가. 교육부 고시에 따라 실습기관에서는 1일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과 1주 1일 이상의 휴일 및 공휴일 1개 월 기준 1일의 휴일, 실습기간 중 학생의 공적 의무 수행일, 경조사일, 입원일 등을 휴일 활용을 보장한다.
나. 실습기관에서는 위 휴일 외 실습기관의 사정 및 필요에 따라 별도의 휴일을 부여할 수 있다.
6. 실습지원비 등
가. 실습기관은 교육부 고시에 따른 실습지원비 기준을 준수하여 [월/주] 기준 원(세전)을 [당월/익월] 일 경에 학생별 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학생이 중도 포기하거나, 결근하는 경우에는 그 실습일수에 비례하여 실습지원비를 지급한다.
나. 실습기관에서 연장·야간 실습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연장·야간 실습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 실습기관에서는 실습지원비 외 해당 실습기관의 편의·복지 제도의 활용을 지원한다.
7. 실습기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 지급, 해당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 및 원재료·가스·분진 등에 의한 건강장해 방지조치 등 안전·보건 상 필요사항을 조치한다.
8. 실습기관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3조에 따른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고

용노동부 고시)에 의거하여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본 대학교에서는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학생이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과 관련하여 재해를 입는 경우 해당보험에 따라 재해보상을 한다.

9. 실습기관에서는 본 협약서 외 학생 별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며 / 체결하지 않으며], 4대보험 중 산재보험 외 다른 보험 등에 [가입한다 / 가입하지 않는다].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더라도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및 지도계획은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협약해지 및 중단 등)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중 부득이하거나, 합당한 협약 해지 또는 중단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실습기관 또는 학생은 본 대학교와 협의한 후 실습기관, 학생, 본 대학교 간 상호 동의 및 합의하에 본 협약을 해지하거나,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실습기관의 귀책사유로 중단되어 학생의 해당 학기 이수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 대학교와 협의하여 해당 실습기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종의 다른 실습기관을 연계하여 학생의 학기 이수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상호협력 등) 본 대학교 및 실습기관에서는 산업안전보호 및 성희롱예방 등 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실습기관 및 학생, 본 대학교는 교육부 고시에 따른 상호 권리 및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운영한다.

제5조(방문 지도·점검) 본 대학교에서는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실습기관의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사항의 적합성을 방문·서면 등으로 점검하고 실습기관에서는 본 대학교의 교직원인 현장을 방문하여 지도 및 점검 시 적극 협조한다.

제6조(출석·평가) 실습기관에서는 교육부 고시의 출석 및 평가 기준에 따라 학생의 출석관리 및 평가를 실시한 후 별지 제3호 서식(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평가표 및 출석부)을 본 대학교에 제출한다.

제7조(기타) 본 협약은 각 조항에 따른 사항이 모두 완료되는 시점에 자동으로 종료되며, 본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부 고시 기준에 따른다.

본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해 각각 서명 날인 후 상호 합의한 방법으로 1부씩 보관한다.

20__년 __월 __일

[학 교]	[실습기관]	[학 생]
목포과학대학교	실습기관명 기입 대표자또는담당부서장 (인)	대학명 기입 ○○○○학과 ○○○(인) (학생이 많을 경우 칸 추가하여 작성)
현장실습지원센터장 (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평가표 및 출석부

■ 평가 대상 학생 정보

대학명		학과/전공	
성명		학번	
실습기관명		실습기간	YYYY.MM.DD ~ YYYY.MM.DD

■ 평가표

*작성방법 : 평가항목별 점수에 ☐ 표기 후 평가 합계 작성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점수					합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수행능력	실무관련 지식	☐ 10	☐ 8	☐ 6	☐ 4	☐ 2	/60
	업무숙지 능력	☐ 10	☐ 8	☐ 6	☐ 4	☐ 2	
	업무이행 (과정)능력	☐ 10	☐ 8	☐ 6	☐ 4	☐ 2	
	업무이행 (결과)수준	☐ 10	☐ 8	☐ 6	☐ 4	☐ 2	
	혁신/창의성	☐ 10	☐ 8	☐ 6	☐ 4	☐ 2	
	소통/표현 능력	☐ 10	☐ 8	☐ 6	☐ 4	☐ 2	
수행태도	성실성/시간관리 능력	☐ 5	☐ 4	☐ 3	☐ 2	☐ 1	/20
	책임감	☐ 5	☐ 4	☐ 3	☐ 2	☐ 1	
	대인관계/협업 능력	☐ 5	☐ 4	☐ 3	☐ 2	☐ 1	
	업무절차/기준 준수	☐ 5	☐ 4	☐ 3	☐ 2	☐ 1	
출결태도	출석/결석/지각(근태)	☐ 20	☐ 16	☐ 12	☐ 8	☐ 4	/20
평가 총점							0 /100

■ 평가 의견

[작성기준] 학생에게 비공개되며, 학생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반적인 실습평가 의견 기술 바랍니다.

■ 학생에 대한 피드백

[작성기준] 학생에게 공개되며, 학생의 장/단점, 개선할 사항, 직무관련 수강교과 제안 등 기술 바랍니다.

붙임 서류	출석부
-------	-----

본 기관에서는 교육부 고시에 따른 표준 현장실습(Co-op) 운영 완료에 따라

귀 대학의 참여 학생에 대한 평가표 및 출석부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실습기관 평가자

실습기관명		부서명	
직위		성명 / 날인	(인)

목포대학교 귀중

【별지18-2】〈현장실습학기제〉(산업체용, 실습 후 제출)

■ 평가 대상 학생 정보

대학명		학과/전공	
성명		학번	
실습기관명		실습기간	YYYY.MM.DD ~ YYYY.MM.DD

■ 출석부

연도	주차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출석 일수	결석 일수	휴일 일수
		일자	출결	일자	출결	일자	출결	일자	출결	일자	출결	일자	출결	일자	출결			
20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																	
	6주차																	
	7주차																	
	8주차																	
	9주차																	
	10주차																	
	11주차																	
	12주차																	
	13주차																	
	14주차																	
	15주차																	
	16주차																	

작성방법

- 연도 : 해당 주차수에 해당하는 연도 기입
- 주차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가 수행되는 주차수 기입(16주차를 초과할 경우 주차수 추가하여 기입)
- 일자 : 월/일 형태로 기입 (예 : 03월 02일의 경우 03/02로 기입)
- 출결 : 출석, 지각, 결석, 휴일 중 기입
 - 출석 : 실습수행 일자에 정상적으로 출석한 경우
 - 지각 : 실습수행 일자에 정해진 시간 이후 출석하여 지각으로 처리되는 경우(실습일수에서는 출석일로 처리하나, 출결태도에 점수 반영)
 - 결석 : 휴일이 아닌 실습수행 일자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무단 결석이 있을 경우 대학과 협의 필요)
 - 휴일 : 실습기관의 휴무일(실습기관에서 정한 휴무일로 실습이 실시되지 않는 경우), 실습기관의 휴무일 외 학생에게 부여(허용)한 휴일(교육부 고시에 따른 학생 보장 휴일 및 공휴일, 실습기관 부여 휴일 등 포함)
- 출석/지각/결석/휴일수 : 해당 주수별 일자를 기입하고, 주수별 합산 7일이 되도록 입력

작성예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출석 일수	결석 일수	휴일 일수
연도	주차	일자	출결	일자	출결	일자	출결	일자	출결	일자	출결	일자	출결	일자	출결			
2020	1주차	12/28	출석	12/29	지각	12/30	출석	12/31	출석	1/1	출석	1/2	휴일	1/3	휴일	5	0	2
2021	2주차	1/4	출석	1/5	출석	1/6	휴일	1/7	출석	1/8	결석	1/9	휴일	1/10	휴일	3	1	3

2021학년도 뷰티미용과 현장실습 결과보고서



2021. 12.

목포과학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1

개요

□ 뷰티미용과 현장실습 운영 목적

- 뷰티미용과에 재학하고 있는 기간중 취업하고자 하는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이수함으로써 취업분야에 대한 정보습득 및 전공분야의 현장체험 경험
- 현장실습을 통해 산업체 요구에 맞는 전공역량을 키우고 그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습득
- 취업 후 현장적응력을 길러 취업유지률을 높이고 진로에 대한 비전 및 동기부여

□ 현장실습 운영기준

- 현장실습은 실습기관의 근로환경과 동일한 여건 하에서 실습하는 것을 전제로 1일 8시간/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연속적으로 실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뷰티미용과의 현장실습에 대한 운영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운영시기	실습기간(시간)
계절제 현장실습	2020. 7. 6~ 7. 31	4주 160시간 이상
		1일 8시간, 1시간 휴무
		주 5일 또는 주6일 (업체지침에 따름)

□ 현장실습 시행지침 (각 학과별 별도의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지침을 작성)

- 뷰티미용과: 산업체의 시행지침과 학교지침에 따른다.

□ 현장실습 운영내용

연번	구분	현장실습 운영 내용	비고
1	현장실습 운영기간	2020. 07. 06. ~ 2020. 7. 31	
2	실습산업체 수	2월 17일 헤어샵 외 13곳	
3	실습대상인원	22명	
4	실습업체 운영사항	산학협력체결	14개
		현장실습동의서	14개
		현장실습 진행	14곳
		만족도조사 실시	14개

□ 각 학과별 현장실습 사전교육 및 오리엔테이션 시행

○ 사전교육 시행 일자 : 2020. 6. 30.(화), 13시

○ 사전교육 내용

연번	구분	내용
1	현장실습 가기 전 준비사항	-산업체 연락처 인지 및 현장실습 전 산업체 방문
		-산업체의 위치, 출퇴근 시간 및 휴무 확인
		-실습 시 필요한 복장 및 신발
2	실습일지 작성법	-실습일지를 매일 작성 후 현장책임자의 확인 필요
		-지도교수가 실습업체를 3회 방문하여 실습에 따른 사항지도
		-현장실습일지는 실습종료 후 일주일내에 제출
3	현장실습 시	-현장실습생의 자세와 태도
		-현장실습생의 준수사항
		-현장실습생의 언어 및 인사, 전화예절
		-시간관리 및 복장상태
4	기타	-실습지에서 무단일탈 또는 기타 불미스러운 행동 시 학칙에 따름

○ 사전교육관련 사진



2

현장실습 운영 주요 내용

□ 현장실습교육 및 세부운영 내용

구분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교육내용	-오리엔테이션 -실습생의 자세	-현장실무	-현장실무	-현장실무
세부운영 내용	-출퇴근 관리 -실습생의 자세	-전공별 현장실무 -실습일지 작성법	-전공별 현장실무 -출퇴근 관리	-전공별 현장실무 -출퇴근 및 일지

□ 현장실습 순회지도

- 현장실습 산업체마다 지도교수가 현장실습 순회지도를 3회 실시함
- 현장실습 순회지도 첫 방문은 실습생의 출퇴근 사항과 실습생의 근무태도에 관해 지도하고 두 번째 방문은 현장실무 자세 및 실습일지 작성에 대해 지도하였으며, 세 번째 방문은 출퇴근 및 시간관리, 현장실무 자세, 만족도 조사에 관해 지도함

연번	실습업체	실습 인원	실습담당지도교수	순회지도 기간	이수인원(명)	
					이수	미이수
1	비비헤어	2	장미라	7/9	1	1
				7/14		
				7/27		
2	2월 17일	2	장미라	7/09	2	
				7/24		
				7/27		
3	퀸스킨케어	1	장미라	7/08	1	
				7/15		
				7/28		
4	약손명가	1	장미라	7/8	1	
				7/15		
				7/28		
5	얼짱몸짱	1	장미라	7/9	1	
				7/14		
				7/27		
6	가람미용학원	2	방수진	7/10	2	
				7/17		
				7/24		
7	가인스킨케어	3	방수진	7/10	3	
				7/17		
				7/24		
8	청담 미즈노블학원	2	방수진	7/10	2	
				7/17		
				7/24		
9	황윤미메이크업	1	방수진	7/9		1
				7/16		
				7/27		
10	바론손톱	3	방수진	7/9	3	
				7/16		

				7/27		
11	성화미장	1	정영태	7/9	1	
				7/16		
				7/30		
12	보그헤어	1	정영태	7/10	1	
				7/17		
				7/31		
13	아름다운 사람들미용학원	1	정영태	7/9	1	
				7/16		
				7/29		
14	류미네일	1	정영태	7/10	1	
				7/17		
				7/30		
총 인원		22	지도교수: 3명		20	2

□ 현장실습 산업체 현황

연번	업체명	협약서 체결 여부	전년도 취업여부	비고

3 현장실습 운영 평가

□ 현장실습교육 운영 평가 계획

○ 현장실습교육 운영 평가 내용

구분	평가 내용	출결상황 확인	실습담당지도교수	비고
1회	-출퇴근 및 실습생의 태도 -실습일지	-확인	장미라 방수진 정영태	
2회	-출퇴근 및 시간관리 -현장실무 자세 -실습일지	-확인	장미라 방수진 정영태	
3회	-출퇴근 및 시간관리 -현장실무 자세 -실습일지 -만족도조사	-확인	장미라 방수진 정영태	

☐ 현장실습 이수자

연번	학번	성명	실습기관	실습기간	완료여부(Y, N)	비고

☐ 현장실습 미이수자

연번	학번	성명	실습기관	실습기간	완료여부(Y, N)	비고

☐ 기타 평가 사항

○ 현장실습 미 이수자에 대한 평가

구분	평가 내용	평가
개인적 문제	-현장실습지 무단이탈 -지속적인 무단 결석 -근무태도 불량 -배우려는 의지 미약	-학교지침에 따름
업체 문제	-안전환경 미비 -성희롱 및 성추행	-실습생을 타 업체로 이동하여 현장실습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평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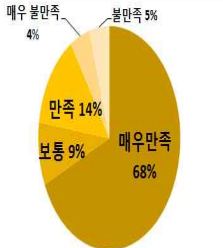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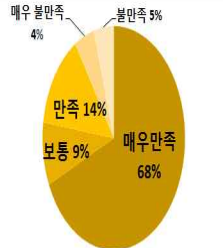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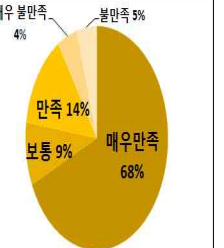
☐ 현장실습 만족도 분석

○ 일반 사항

구분	분류	빈도(명)	비율(%)	비고
남/여	여	21	95%	- 군 휴학 등으로 남학생보다 여학생 비율이 높음
	남	1	5%	
실습지역 (17곳)	목포	6	43%	-코로나로 인해 이번 실습업체 위치는 목포가 가장 많고 목포의 인근지역에서 다수 진행됨
	광주	2	14%	
	무안(남악)	5	36%	
	해남	1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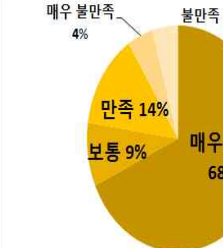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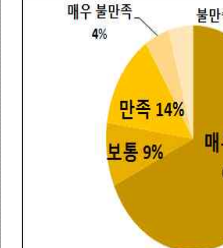
뷰티미용과 현장실습에 관한 산업체 만족도 조사

■ 현장실습 내용의 실효성

전공지식과 능력	현장실습 참여에 대한 적극성	현장실습 분위기 도출	참여학생에 대한 취업 제의
			-얼짱몸짱피부관리실: 1명

- 산업체의 현장실습 전공지식 및 능력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이 00%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으며 현장실습참여에 대한 적극성도 00%의 긍정적인 답하였다. 또한 현장실습 분위기 도출, 참여학생에 대한 취업제의도 00%로 긍정적임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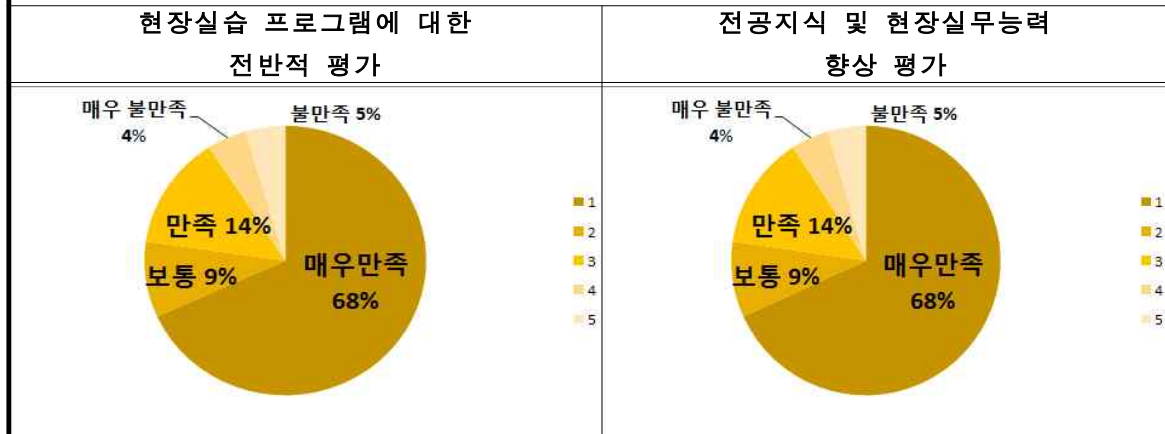
■ 현장실습 운영의 적정성

현장실습 계획 및 일정	실습기관의 요구 및 의견 반영	산학협력 및 교류 진행
		

- 현장실습계획 및 일정에 대한 만족도는 00%로 만족도가 높았음을 알 수 있으며, 실습기관의 요구 및 의견반영, 산학협력 및 교류진행에 대한 만족도도 각각 00%, 00%로 만족도가 대체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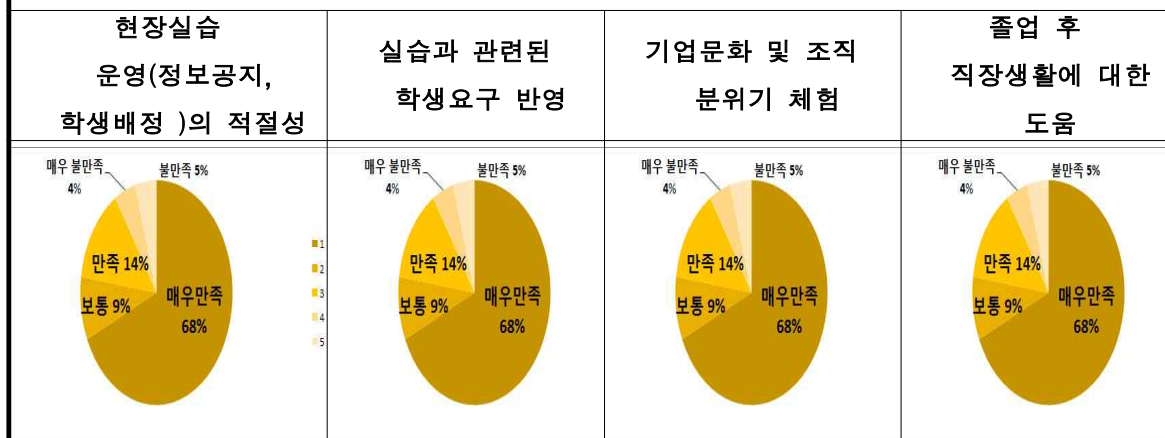
뷰티미용과 현장실습에 관한 학생 만족도 조사

■ 현장실습에 대한 평가



- 현장실습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만족이 00%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으며 전공지식 및 현장실무능력 향상 평가도 00%의 긍정적인 답하였다.

■ 현장실습 운영의 실효성과 적절성



- 현장실습운영에 대한 만족도는 00%로 만족도가 높았음을 알 수 있으며, 실습과 관련된 학생 요구 반영, 기업문화 및 조직 분위기 체험에 대한 만족도도 각각 00%, 00%로 만족도가 대체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졸업 후 직장생활에 대하여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00%h 나타나 현장실습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뷰티미용과 현장실습에 관한 교수 만족도 조사

■ 현장실습에 대한 평가

학교차원의 현장실습 지원	현재의 현장실습 운영방식 평가	현장실습과 수업과의 연관성
매우만족 4% 만족 14% 보통 9% 불만족 5% 매우불만족 0%	매우만족 4% 만족 14% 보통 9% 불만족 5% 매우불만족 0%	매우만족 4% 만족 14% 보통 9% 불만족 5% 매우불만족 0%
- 학교차원의 현장실습 지원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이 00%로 매우 만족함을 나타내었고, 현재의 현장실습 운영방식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현장실습과 수업과의 연계관계에 대해서는 00%의 만족도를 보여 주었다.		

■ 기타의견

산업체

- 실습기간을 좀 더 늘려주셨으면 좋겠다.

- 실전 실무 적용 실습을 좀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

학생

- 실습하는 업체와 집의 거리가 멀어 불편했다(교통비가 많이 소요)

교수

-

5

기대효과

□ 기대효과

- 현장실습을 통하여 진로에 대한 확신과 취업 후 산업체 적응력 향상
- 현장실습을 하면서 근무태도와 마인드가 좋은 경우 약정취업 가능
- 취업분야에 대한 전공지식 및 전공역량 강화
- 진로에 대한 환경을 미리 접해보고 본인의 적성과 맞는지 재확인을 통해 취업진로 확정
- 예비취업자로서의 마인드 및 직업관 향상

6

환류

□ 성과

- 이번 현장실습순회지도는 한 업체당 1회에서 3회로 지도교수의 순회지도 횟수가 증가하였으며 코로나로 인해 현장실습을 나가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속적인 산업체연계 및 학생지도가 진행되어 성공적인 현장실습이 운영됨

□ 개선사항 및 개선방안

연번	개선사항	개선방안
1	■ 현장실습생 교육	- 실습생들의 직로 및 직업관 교육확대 - 현장실습 전에 학생에 대한 성향 및 긴밀한 상담 필요 -체계적인 현장중심 교육운영 필요 -현장실습 오리엔테이션 및 준비교육을 1회에서 3회이상 운영 필요
2	■ 현장중심 교육환경	-현장에서 필요한 산업체 요구도 반영 교육필요 -현장 트렌드에 맞는 기자재 및 교육환경 개선 필요
3	■ 현장실습 매뉴얼	-산업체와 협의하여 현장실습 매뉴얼 및 시스템 개발 -산업체와 긴밀한 연계성 필요

□ 환류 계획

- 목포와 인근지역 현장실습순회지도 횟수를 상향조정하여 운영한 결과 실습생의 근무 태도 및 출퇴근 관리, 약정취업상담 등에 도움이 되어 차년도에도 반영하여 목포 등 인근 지역 산업체의 경우 현장실습 순회지도를 한 업체당 2~3회 실시할 예정임
- 산업체와 협의하여 현장실습 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매뉴얼시스템을 만들어 차년도 반영